

edunet.smu.ac.kr
SANGMYUNG UNIVERSITY



2026

교직과정 안내

Teacher Training Support Center

[목 차]

1. 교사자격	1
1.1 교사 자격 기준	1
1.2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1
2. 교직과정 이수	3
2.1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3
2.2 이수 학점 기준 안내	4
전공과목 이수 기준	4
교직과목 이수 기준	7
교육실습 교과목 안내	9
3. 이수교육 안내	15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18
5. 교원자격증 발급	19

1.

교사 자격

1.1 교사 자격 기준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 별표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교직과정 이수자)

1.2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 교원양성기관 운영 현황

◆ 사범대학

단과대학	학과/전공	표시과목	입학정원(*2026학년도 기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	43명
	영어교육과	영어	37명
	수학교육과	수학	33명
	교육학과	교육학	29명

◆ 일반대학 교직과정

단과대학	학과/전공	표시과목	승인 정원(*2025학번 선발)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사서	2명
생명화학공학부	식품영양학전공	조리	2명
SW융합학부	컴퓨터과학전공	정보·컴퓨터	8명

* 사범대학 입학정원 및 교직과정 승인 인원은 매년 교육부 승인 결과 후 결정

⌘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지원자격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이 제1전공(주전공)인 2학년(3학기/4학기) 재학생
 - ※ **컴퓨터과학전공은 2024학번 이후 학번만** 신청 가능
- 총 평점/평균 2.0 이상, 학기별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조기 복학 등으로 재학 학기는 3학기이나 학년이 3학년인 경우 또는 3학년으로 재입학 및 편입한 경우, 신청 불가
 - ※ 비사범계 재학생이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하며, 학과/전공 졸업 요건 및 교직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선발기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내용	전공 연계 교직 인·적성 평가	교직 적합성 심층 면접 평가	성적 평가

※ 선발기준 및 전형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방법

- 지원신청: 5월 중 안내되는 선발 계획에 따라, 샘물 시스템에서 신청
- 선발평가: 서류 평가 및 면접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안내

★ 교직 이수 자격 박탈

- 사범대학 재학생이 비사범계 단과대학으로 소속 변경(전과) 시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전과로 인한 소속 변경 시
 - 변경된 소속 학과/전공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경우에도 교직이수 불가능
- 교직 이수를 포기한 경우

2. 교직과정 이수

세부 항목별 교직과정의 이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교원 자격 및 양성 관련 법령에 의거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2024학번 이후 입학자	
	사범계	비사범계
전공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8학점(5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3과목)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7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3과목) 이상
성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점/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점/100점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4회(비사범계 2회) 이상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 (성범죄경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

- ♣ 신입학: 신입학 연도
(예. 2026학년도 신입생 → 2026학년도 기준)
 - ♣ 편입학: 편입 시 부여받은 학번 기준
(예. 2026년 3학년 편입생 → 2024학년도 기준)
 - ♣ 교직과정(비사범계) 이수자: '**교직과정 선발 연도-1**' 기준
(예. 2024학번 학생이 휴학 후, 2026년에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되는 경우, 2025년(=2026년-1)을 이 학생의 입학 연도로 해석)
- ★ 교직이수대상자: 2학년에 선발(* 컴퓨터과학전공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가능)

2.2 이수 학점 기준 안내(* 2024학번 이후 입학자 기준)

⌘ 전공과목 이수 기준

◆ 전공교과영역

구분	사범계	비사범계
전공교과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필수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학과/전공별 8학점(3과목) 이상 필수 이수 ※ 문헌정보학전공 제외 	
	학과/전공	과목명
	국어교육과	국어교과논리및논술 국어교과교육론 국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영어교육과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영어교과교육론 영어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수학교육과	수학교과논리및논술 수학교과교육론 수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육학과	교육학교과평가방법론 교육학교과교육론 교육학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식품영양학전공	조리교과교육론 조리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조리교과논리및논술
	컴퓨터과학전공	정보·컴퓨터교과교육론 정보·컴퓨터교과별교수법 정보·컴퓨터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교원양성과정 전공 이수 학점 관련 사항 안내

-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50학점 이상 이수)과 학과/전공별 **졸업 전공 이수학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졸업
- 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취득 학점은 전공 취득 학점으로 인정
- 교직 취득 목적 다전공 이수예정자
 - ① 주전공 및 다전공 전공학점 각 50학점 이상 이수
 - ② 주전공 및 다전공 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모두 이수
- 학위 취득 목적 다전공 이수예정자(***교직 취득 미희망자**)
 - : 학과/전공별 졸업 기준 취득 학점 이수 및 졸업요건 충족

■ 학과(전공)별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표(*2024학번부터 적용)

학과/전공	표시과목	교과목명	학수번호	학점
국어교육과	국어	국어교육론	HABA9003	3
		국어사	HABA3211	3
		국어학개론	HABA1011	3
		국문학사	HABA2131	3
		소설교육론	HABA2172	3
		현대시교육론	HABA2141	3
		화법교육론	HABA5002	3
		합계		
영어교육과	영어	영어문법지도법	HABB1121	3
		영어독해	HABB1032	3
		영미문화	HABB2141	3
		영어작문	HABB1011	3
		영문학개론	HABB2171	3
		영어학개론	HABB3251	3
		영어회화	HABB6001	2
		영어음성음운론	HABB2212	3
합계			23	
수학교육과	수학	해석학1	HABF2171	3
		현대대수학1	HABF3251	3
		확률및통계1	HABF3241	3
		미분기하학	HABF2161	3
		위상수학1	HABF3231	3
		복소함수론	HABF3262	3
		수학교과교육론	HATT0066	3
		합계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과정	HABE2172	3
		교육철학과교육사	HABE1111	3
		교육심리	HABE2141	3
		교육평가	HABE3161	3
		교육사회학	HABE2151	3
		교육행정	HABE3272	3
		교육학개론	HABE0001	3
		교육공학	HABE4231	3
합계			24	

학과/전공	표시과목	교과목명	학수번호	학점
문헌정보학전공	사서	정보자료분류법	HAAH1132	3
		자동화목록법실습	HAAH2151	3
		온라인정보검색	HAAH3221	3
		디지털도서관과IT	HAAH3302	3
		미디어센터운영	HAAH0002	3
		독서지도	HAAH6008	3
		정보서비스론	HAAH2182	3
		합계		
식품영양학전공	조리	현대인의영양과건강	HACL0002	3
		실험조리	HACL5001	3
		한국조리	HACL0008	3
		식품위생학 및 실험	HACL6013	3
		서양조리	HACL6014	3
		식품가공및저장학	HACL6016	3
		급식경영및인사관리	HACL6008	3
		단체급식관리및실습	HACL6024	3
		합계		
컴퓨터과학전공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교과교육론	HAEA9252	3
		파이썬프로그래밍	HAEA9225	3
		알고리즘	HAEA0010	3
		이산수학	HAEA0001	3
		인공지능	HAEA0017	3
		자료구조	HAEA9241	3
		데이터베이스	HAEZ0004	3
		운영체제	HAEZ0003	3
		컴퓨터네트워크	HAEA0004	3
		컴퓨터구조	HAEA0002	3
		논리회로	HAEA0027	3
		소프트웨어공학	HAEA0008	3
		합계		

☞ 교직과목 이수 기준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 선택 이수
	교육심리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생활지도및상담	2	
상명 특성화 교직 이론	교직과미래교사	2	선택
교직소양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직소양 5과목 (8학점)이상 필수 이수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디지털교육	1	
상명 특성화 교직 소양	미래교사와의사소통	1	선택
	미래교사와인성	1	
	미래교사와학교현장	1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I	1	교육실습 3과목(4학점) 필수 이수
	교육봉사활동 II	1	
	학교현장실습	2	

◆ 교육학과

교육학과에 한하여 교직이론 교과목은 12학점 이내에서 전공과목으로 대체되며, 대체되는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추가 이수해야 함

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이론	생활지도및상담	2	선택
상명 특성화 교직 이론	교직과미래교사	2	선택
교직소양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직소양 5과목 (8학점)이상 필수 이수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디지털교육	1	
상명 특성화 교직 소양	미래교사와의사소통	1	선택
	미래교사와인성	1	
	미래교사와학교현장	1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I	1	교육실습 3과목(4학점) 필수 이수
	교육봉사활동 II	1	
	학교현장실습	2	

◆ 비사범계: 문헌정보학전공/식품영양학전공/컴퓨터과학전공

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 선택 이수
	교육심리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생활지도및상담	2	
상명 특성화 교직 이론	교직과미래교사	2	선택
교직소양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직소양 4과목 (7학점)이상 필수 이수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디지털교육	1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I	1	교육실습 3과목(4학점) 필수 이수
	교육봉사활동 II	1	
	학교현장실습	2	

※ 문헌정보학전공 실무실습은 학교현장실습 분반의 한 형태로 운영함

※ 주의사항

- ① 졸업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하고, 적용 학번은 본인 입학 연도 기준
- ②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가 원칙**. 단, 불가피하게 학점 교류로 타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만 인정 가능(**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반드시 첨부**)
 - * 이수 구분 확인: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은 '전공', <교직교과목>은 '교직'
- ③ 해외 대학 교환학생: **교직과목 인정 불가**, 기본이수과목은 **번역 시 과목명이 동일**해야 함
 - * 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 교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첨부 필수**, 미제출 시 학점 인정이 불가함
- ④ 교육학과 2013학번 이후 입학자: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 교직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미충족된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 단, 전공과목 50학점+12학점 추가 이수

☞ 교육실습 교과목 안내

◆ <교육봉사활동 I>, <교육봉사활동 II>

■ 교육봉사의 의미

- 예비 교사의 전문적 지식을 교육적 방법을 통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공공기관(비영리기관)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적 방법(Teaching)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 대상 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외국 대학 또는 교육청 지정 초·중등·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교육봉사 인정 활동

인정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과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불가 활동: 자율학습 감독, 급식지도, 도서 정리, 교재 제작, 시험지 채점, 아동 안전 도우미, 등·하교 교통지도, 금연 지도 캠페인 등 교육과 무관한 내용 및 아파트 단지 내 야학 모임 등 2. 초·중·고·특수학교(학교현장실습 가능 학교,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인정 기관) :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지도/ 학습 부진아 개별지도(방과 후 공부방)/ 진로·진학 상담 및 학업 상담지도 등 3.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확인되어야 하고, 비영리 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됨 4.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5.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인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기관명과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기관명이 일치해야 함
----------	--

■ 교육봉사 인정 분야

프로그램명	세부 분야	활동 내용
교과목 학습지도	국어/영어/수학/기타	교과별 학습지도, 진로 탐색 등
방과 후 돌봄	숙제 점검/ 신체활동	숙제 지도 및 활동(활동 보조)지도
특기적성지도	음악/미술/체육 등	특기 적성 및 예·체능 활동(활동 보조)지도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자기주도학습/개별·그룹지도	공부 습관 지도 및 학습계획 작성 등
체험학습 지원	체험활동 보조	체험활동 준비 및 지원, 지도교사 지원
기초학력 향상	기초학력 향상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 교육봉사활동 진행 순서

교육봉사 활동 전	교육봉사 활동 중	교육봉사 활동 완료
<p style="text-align: center;"><승인 신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 기간: 3월/5월/7월/9월/11월/1월 첫째 주~둘째 주</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봉사활동 기관 서류 ② 활동 시간 및 내용 ③ 교과목 수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청자도 활동 가능 - 교과목 신청자는 활동 날짜 중복 시 미인정 ④ 활동비 지원비용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 지급 실비는 1일(1회) 2만원 미초과는 가능 - 활동비는 인정 불가 ⑤ 사회봉사와 중복 시 인정되지 않음 	<p>→</p> <p style="text-align: center;"><승인 확인 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승인” 확인 후, 봉사활동 시작</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학생만 활동 가능 ② 봉사활동 시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봉사활동 I : 30시간(1학점) - 교육봉사활동 II : 30시간(1학점) ③ 1일 최대 8시간 인정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활동 완료 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봉사활동 완료 후, 활동 결과 서류 제출</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봉사활동 완료 후, 기관 담당자에게 결과 서류 받기 ② 교과목 수강 신청자는 e-campus에 기간 내 상시 제출 가능 ③ 활동만 진행한 학생은 서류 보관 후, 교과목 수강한 학기에 서류 제출 ④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성적 ‘P’ 부여 ⑤ 승인 여부 미확인 시 미인정

■ 교육봉사 이수 단계별 안내

단계	내용	주의 사항
1단계	<p style="text-align: center;">봉사활동 기관(활동) 선택 후 승인 신청</p> <hr/> <p>* 신청방법 :샘물→학사→교직→교육봉사→교육봉사신청</p> <p>* 승인 신청은 ‘3월/5월/7월/9월/11월/1월’ 각 첫째 주~둘째 주에 진행되며, 신청 후 주말 제외하고 다음 날 오후 2시 이후 승인 여부 확인 가능</p> <p>* ‘승인(확정)’ 확인 후에 활동을 시행해야 하며, 미승인 된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p>	<p style="text-align: center;">교직원지원센터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하고, 재학생만 신청 가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학기 교과목 신청 여부 확인 : <교육봉사활동 I >과 <교육봉사활동 II > 순서로 수강 신청을 권장하나, 동시 수강 및 순서 변경도 가능함 - 봉사활동 기관 정보 입력 :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 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1 - 활동 내용 및 시간 입력 :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목적의 활동인지 확인하고, 봉사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인정됨 : 일자 및 시간 중복 인정 불가 - 유·무급 여부 입력 : 유급인 경우, 지급 목적 및 명목에 대해 상세히 기재 * 1일(1회)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활동비는 인정되지 않음

단계	내용	주의 사항
2단계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진행	교직원지원센터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진행
	활동 기관별 일정에 따라 봉사활동 진행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 교육봉사활동 이수 조건: 총 60시간 : 교과목별 30시간(1학점)씩 봉사활동을 진행해야 하고, 중복된 날짜에 대한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와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동시 진행 불가
3단계	봉사활동 종료 후 관련 제출 서류 확인 <제출서류> ① 교육봉사활동 일지 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③ 교육봉사활동 자기성찰 보고서 ※ 제출 기간은 해당 학기 교과목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및 교직원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교과목 수강 신청 한 해당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I> 또는 <교육봉사활동 II> 교과목별 e-class에 각각 제출 - 사전 승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활동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활동일지에 기관 담당자와 학생의 직인/날인 등 누락 된 경우, 서류 인정 안됨 - 30시간 이상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교육목적'과 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이 부적합 시 인정하지 않음

◆ <학교현장실습>

■ 교육실습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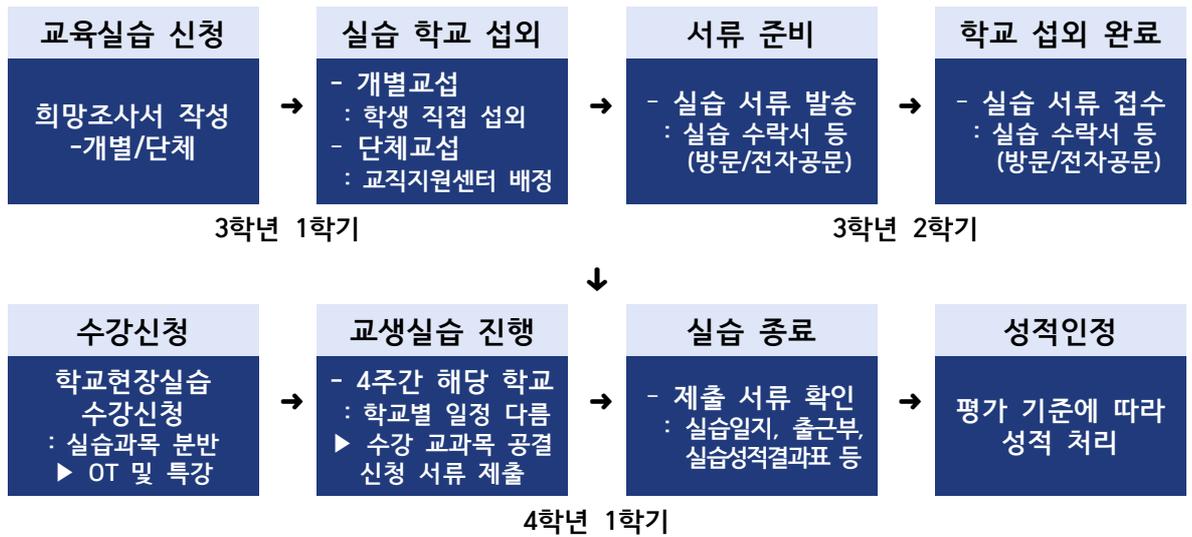
-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교수법과 학습법을 배우고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하는 교육역량을 함양하는 과정

실습 대상	4학년 1학기(6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신청 기간	실습 전년도 5월 중 실습 희망 학생 조사	
실습 기간	4주	
실습 과목	주전공 표시 과목(* 교육학과: 다전공 과목 가능)	
실습 학기	단체교섭	1학기
	개별교섭	1학기, 2학기
실습 방법	단체교섭	상명대학교 협력 학교(교직원지원센터 배정)
	개별교섭	학생 모교 또는 거주지 근방 중·고등학교 직접 섭외
진행 순서	실습 여부 조사 → 학교 섭외(단체/개별) → 관련 서류 발송 → 교과목 신청 → OT 진행 → 교생실습 시작 → 실습 종료 → 결과 서류 제출 → 교과목 성적 인정	

※ 주의사항

- ① 단체교섭은 1학기(3월 학기)에만 진행되며, 선착순 등록으로 진행됨
- ② 단체교섭은 협력 학교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선착순 진행)
- ③ 학교현장실습 기간에는 공결 처리 가능

◆ <학교현장실습> 진행 순서(*4학년 1학기 실습생 기준)



■ 교육실습 상세 안내

순서	주요사항	실습 시기 (신청 시기)	상세내용
① 신청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희망조사서 작성	1학기 (6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지도 설명회'(6월 초 진행)에 참석하여, 실습 관련 안내 사항 및 진행 방법 확인 - 교육실습 희망자 조사 * 교육실습 미참여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희망 실습 시기에 따라, 해당 URL을 교직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실습 방식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교섭 : 교직원지원센터에서 협력학교에 일괄 배정 ☞ 개별교섭 : 학생 본인 모교 혹은 주거지 근방 중·고등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섭외
		2학기 (6월 말)	<p>*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체교섭은 1학기에만 진행되며, 학교 배정 후에는 학교 변경 불가 ② 희망조사서 작성 기간에는 단체교섭에서 개별교섭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기존에 제출한 희망조사서는 삭제되므로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해야 함 ③ 개별교섭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먼저 연락하여 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 후에 희망조사서 작성 ④ 실습 기간은 4주로 실습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 일자는 다름

순서	주요사항	실습 시기 (신청 시기)	상세내용
② 학교 섭외	실습학교 섭외 및 관련 서류 준비	1학기 (6월 초~)	- 단체교섭 신청 학생: 별도의 섭외 과정 없음 * 주의사항 ① 실습을 희망하는 해당 학기에 '재학' 일 때 신청해야 함 * '휴학' 예정자 신청 불가 ② 단체교섭은 선착순 으로 배정 되며, 협력 학교 상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③ 단체교섭 신청 후, 개별교섭 변경은 희망 조사서 작성 기간에만 가능함 ④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원지원센터에 알려야 함 ⑤ 단체교섭으로 협력 학교에 배정된 후에는 학교 변경은 불가 하며, 취소는 가능 하나 취소 후에 재신청은 불가 함
		2학기 (6월 말~)	- 개별교섭 신청 학생 * 교직원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관련 서류 및 내용 등 참조 필수 ① 희망조사서에 작성한 섭외된 학교에 방문 또는 공문으로 교육실습 서류 준비 ㉠ 학교현장실습 지도 허가 요청 기안 ㉡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 수락서 ② 실습 관련 서류 송부 ㉠ 학교 방문 시: ①에서 준비한 서류를 실습 담당 교사에게 제출 후, 작성하여 제출 ㉡ 공문 발송 시: ①에서 작성한 서류를 교직원지원센터 메일로 공문 발송 요청 * 주의사항 ① 실습을 희망하는 해당 학기에 '재학' 일 때 신청해야 함 * '휴학' 예정자 신청 불가 ② 실습학교 섭외 완료 후, 취소 하는 경우는 학생 본인 이 직접 처리 해야 함 ③ 개별교섭 수락서 제출 후, 실습 기간 등 변경 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직원지원센터에 변경된 내용을 전달 해야 함
③ 학교 섭외 완료	실습학교 별 서류 회신 확인	학기 중	- 단체교섭 신청 학생: 별도 진행 과정 없음 - 개별교섭 신청 학생 ① 학생 개인별 제출 서류 회신 ㉠ 직접 제출 시: 교직원지원센터에 서류 제출 ㉡ 공문 발송 시: 학교별/학생별 회신 서류 확인 후에 실습 일자 및 기간 홈페이지에 게시 ② 개별교섭 수락서 제출 시에 실습 기간이 미정 일 경우 지정된 날짜 확인 후에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 함 * 제출 서류: 개별교섭 수락서, 학교 통장 사본

순서	주요사항	실습 시기 (신청 시기)	상세내용
④ 실습 진행	실습 준비 및 실습 진행	학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 실습 교과목 분반 - 교직지원센터 진행 OT 온라인 참석 - 1학기에 실습 진행 학생은 분반(실습교과)별 진행 OT 및 특강 등 참여(* 2학기는 분반 없음) - 교직지원센터 연락 확인 후, 실습 관련 자료 및 물품 수령(* 센터 방문) → 실습 일정에 따라 개별 연락 예정 - 실습학교 별 OT가 진행 될 수 있음
⑤ 실습 종료	실습 종료 및 서류 제출	학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주간 실습 종료 후, 기간 내 서류 제출 : 실습일지, 강의계획서(기준은 과목별 확인) 등 → 미제출시 성적 부여 불가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분반별 진행 사항 확인
⑥ 성적 부여	제출 서류 및 실습학교 학생 평가 결과	학기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시 작성 및 제출 서류 평가 결과와 학생별 실습학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적 반영 - 성적 결과에 따라 우수상 수상자 선발
⑦ 우수자 선발	제출 서류 평가 결과	종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 선발 - 12월에 총괄 진행하며, 총장 명의 상장 배부

3. 이수교육 안내 (* 2024학번 이후 입학자 기준)

☞ 이수 교육(* 2024학번 이후 입학자 기준)

구분	사범계	비사범계	비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 판정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습 및 교육 참여		
성인지교육	4회 이상	2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 적격판정 필수**

■ 검사 진행 순서

- 사범대학 학생: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 교직과정(비사범계) 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후 ~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순서	시기	비고						
신청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샘물→학사→교직정보→적성 및 인성검사평가 신청 * 선착순 으로 대상자 선정 되며, 선정 후 검사 당일 미참석 시 다음 학기 신청 불가						
검사	학기당 4회 진행	- 대상자 선정 후, 일정에 따라 개별 안내(검사일, 장소 등) - 검사 당일 응시자는 공결 서류 제공 가능						
결과	검사 후 2주 이내	검사 결과 ' 부적격 '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재응시 가능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head> <tr> <th>부적격 횟수</th> <th>절차</th> </tr> </thead> <tbody> <tr> <td>1회</td> <td>지도교수 상담</td> </tr> <tr> <td>2회</td> <td>학과장 상담 및 학생상담센터 연계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이수</td> </tr> </tbody> </table> → 재응시 가능	부적격 횟수	절차	1회	지도교수 상담	2회	학과장 상담 및 학생상담센터 연계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이수
부적격 횟수	절차							
1회	지도교수 상담							
2회	학과장 상담 및 학생상담센터 연계 적성 및 인성 프로그램 이수							

* **선착순**으로 대상자 확정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검사 권장 이수 시기

구분	사범대학생	교직과정(비사범계) 학생
1학년 1학기(1학기)	검사 권장	X
1학년 2학기(2학기)		
2학년 1학기(3학기)	검사 권장	X
2학년 2학기(4학기)		
3학년 1학기(5학기)	검사 권장	X
3학년 2학기(6학기)		
4학년 1학기(7학기)	검사 권장	X
4학년 2학기(8학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2회 이상 참여 필수**

■ 교육 및 실습 진행 순서

- 사범대학 학생: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 교직과정(비사범계) 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후 ~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순서	시기	비고
신청	1학기: 3월 중 2학기: 9월 중	샘물→학사→교직정보→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 선착순 으로 대상자 선정 되며, 선정 후 교육·실습 당일 미참석 시 다음 학기 신청 불가
검사	학기당 3~4회 진행	- 대상자 선정 후, 일정에 따라 개별 안내(교육일, 장소 등) - 교육·실습 선정자는 참석 및 이수 결과 확인 후에 이수증으로 공결 서류 대체 가능
결과	교육·실습 후 3주 이내	이수증 발급은 학기별 교육·실습 완료 이후 별도 안내

※ **선착순**으로 대상자 확정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검사 권장 이수 시기

구분	사범대학생	교직과정(비사범계) 학생
1학년 1학기(1학기)		X
1학년 2학기(2학기)		
2학년 1학기(3학기)	검사 권장	
2학년 2학기(4학기)		
3학년 1학기(5학기)		검사 권장
3학년 2학기(6학기)		
4학년 1학기(7학기)	검사 권장	
4학년 2학기(8학기)		검사 권장

※ **주의사항**

: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성인지교육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기준에 따라 이수 필수

■ 교육 및 진행 순서

- 사범대학 학생: 재학 중 4회 이상 이수
- 교직과정(비사범계) 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후 ~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 이수 과정 중 **1회 이상**은 반드시 **대면 특강**에 **참석**하여 이수해야 함
- **연 1회 이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연 2회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교육 참석 이후** <성인지 중복 수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구분	시기		비고
신청	1학기	대면특강: 3월 중 온라인특강: 4~5월	샘물→학생기본→교직정보→성인지교육 신청 ※ 선착순 으로 대상자 선정 되며, 대상자는 별도 안내 예정
	2학기	대면특강: 9월 중 온라인특강: 10~11월	
교육 이수	대면특강		- 특강은 4차시로 진행 - 입실 시/ 차시별/ 만족도 조사로 출결 확인 - 특강 시작 10분 이후부터 입실 불가 - 중도 퇴실 시 10분 이후 재입실 불가 -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야 출결 인정
	온라인특강		- 4차시 영상으로 재생율이 각 100%만 인정 - 기한 내 4개 영상 재생율이 100% 미달 시 인정되지 않음
참조	<성인지 중복 수강 사유서>는 2025년 이후 중복 수강생만 작성 필요		

※ **선착순**으로 대상자 확정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검사 권장 이수 시기

구분	사범대학생	교직과정(비사범계) 학생
1학년 1학기(1학기)	온라인 교육 권장	X
1학년 2학기(2학기)		
2학년 1학기(3학기)	대면 특강 교육 권장	대면 특강 교육 권장
2학년 2학기(4학기)		
3학년 1학기(5학기)	온라인 교육 권장	
3학년 2학기(6학기)		
4학년 1학기(7학기)	온라인 교육 권장	온라인 교육 권장
4학년 2학기(8학기)		

※ **주의사항**

: <성인지 중복 수강 사유서> 작성 대상자는 두 번째 **교육 이수 완료 후 제출**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의 기본 원칙

자격기준 중 교직요건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도의 시험 없이 진행되며, 무시험검정을 통과한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

◆ 무시험검정 신청 대상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를 근거로 졸업 예정 학기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고 기준 및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대상	시기	내용
졸업 예정자	1학기: 6월 중 2학기: 12월 중	샘물→학생기본→교직정보→무시험검정 신청 ※ 주전공, 다전공 각각 모두 신청 필수

※ 주의사항

- 1학기(4월말~5월초), 2학기(10월말~11월초)에 진행되는 예비교직사정으로 대상 여부 판단
- 수료/초과 학기 예정자는 무시험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시험검정 원서는 대상자 본인 학과/전공 사무실로 제출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회

구분	내용	시기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대상자 본인 직접 시행(TBPE 검사) 후, 본인 학과/전공 사무실에 검사 결과서 원본 제출 → 복사본/스캔본 불인정	매 학기 졸업 예정자 대상
성범죄경력 확인	무시험검정 신청 대상자 → 교직지원센터 일괄 조회	교직 사정 진행 시

★ 무시험검정 서류 미제출 및 TBPE 검사 결과 원본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5. 교원자격증 발급

⌘ 교원자격증 발급

◆ 발급 일자

전기/후기 학위수여식 날짜와 동일

◆ 교원자격증 배부

전기/후기 학위수여식 당일 각 학과(전공) 사무실에서 학위증명서와 함께 배부

※ 수령 방법은 학위수여식 공지 확인

상명대학교 교직과정 이수 안내

발행처 상명대학교 교무처 교직지원센터
연락처 종로구 홍지문2길20 사범대학관 3층
A302-1호 교직지원센터
전화 02-2287-5089
팩스 02-2287-0063
홈페이지 <https://edunet.smu.ac.kr/>